

의안번호	2219908
의 퇴 인	김용태의원
회 답 일	2026.9. 10.
추계번호	26B3491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5조(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)	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사회적·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(이하 “녹색경영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도록 지원·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6.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, 온실가스 공동감축 및 녹색경영을 위한 공급망 협력에 대한 지원 8.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홍보·판로개척 및 국외 진출에 대한 지원 9.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녹색경영 정보의 표준화·공유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·활용	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5조(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)	·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정부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녹색기술 공동개발·온실가스 공동감축·공급망 협력을 지원하고,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홍보·판로개척·국외 진출 및 녹색경영 정보의 표준화·공유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관련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- 참고로,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55조¹⁾에 따라 「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」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하여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·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설계비, 구입비, 공사비, 시운전비 및 경영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190억 5,500만원임 (참고자료 참조)

□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거나 신규로 추진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관련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1) 제55조(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)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·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(이하 “녹색경영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도록 지원·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
2.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,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공개
3. 기업의 에너지·자원 이용 효율화,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,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
4.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
5.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기술 지도·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
6.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
7.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·확보 및 국외 진출
8. 그 밖에 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nabo.go.kr

[참고자료]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개요

(자료:중소벤처기업부)

□ 사업목적

- 중소기업의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

□ 사업개요

- (지원규모) '26년 19,055백만원
- (지원대상) ①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②자발적 감축 중소기업
 - ①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 수출기업,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 협력사,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 우대 지원
 - ② 감축 규제대상 아닌 중소기업
- (지원조건) 국고보조금 최대 3억원, 보조율 50~70%이내
- (지원내용)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, 탄소감축설비 도출(실시·설계지원)
 -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
 - (실시·설계지원) 중소기업 탄소중립 경영전략 수립 및 에너지·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
 - (설비도입지원)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·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, 공사비, 시운전비 등 지원